

1. 개정이유

신설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임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취소 이력이 있는 인증기관의 재지정 방지(안 제4조, 제1호서식)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취소 이력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나.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5조의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취소 및 업무정지 사항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고,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인용조문 최신화(안 제1조, 제3조, 제5조)

법 개정에 따른 부령 위임사항을 본 규칙의 목적 규정에 추가하고, 법 제19조의 항이 구분됨에 따라 부령 내 인용 조문을 최신화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대상(규제영향분석서 별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으로,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을 “**운영기관의 지정 및 인증기관의 지정과 취소**”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법 제19조**”를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제1호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거나 제2호에 따라 1년 이내에 지정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신청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 여부 단,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제6항 전단 중 “법 제19조”를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증기관이 별표 3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처분대상 인증기관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를 제2항에 따라 심의가 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과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그 처분 전에 신청 받은 인증업무에 한하여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가 종료될 때 까지는 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본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7조 제5항,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 운영기관의 지정 및 인증기관의 지정과 취 소, ----- ----- -----.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생략) ⑥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생략) ⑥ ----- 법 제19조제1항 ----- -----.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확 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제1호에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 ⑤ (생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따른 확인을 거부하거나 제2호에 따라 1년 이내에 지정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신청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 여부. 단,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 ⑧ (생략)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법 제19조 제1항 -----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신설>

-----.

-.

제5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증기관이 별표3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처분대상 인증기관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를 제2항에 따라 심의가 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과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그 처분 전에 신청 받은 인증업무에 한하여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가 종료될 때 까지는 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3]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5조의2 제1항 관련)

<신 설>

개정안

[별표 3]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5조의2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증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인증기관 유효기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개별기준 바목의 경우 인증기관이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차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180일 이내	지정 취소	
다.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90일 이내	업무정지 180일 이내	지정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90일 이내	업무정지 180일 이내	지정 취소
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5호	지정 취소		
바.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180일 이내	지정 취소	
사.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180일 이내	지정 취소	

※ 비고

1. 규칙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한정하여 업무정지 의결을 할 수 있다.

2. 제2호 개별기준 다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제10조를 따른다.

3. 제2호 개별기준 사목의 경우는 제4조제2항, 제4항, 제5항(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경우 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을 만족, 또는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기관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근거		
	설립목적		
	설립연월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15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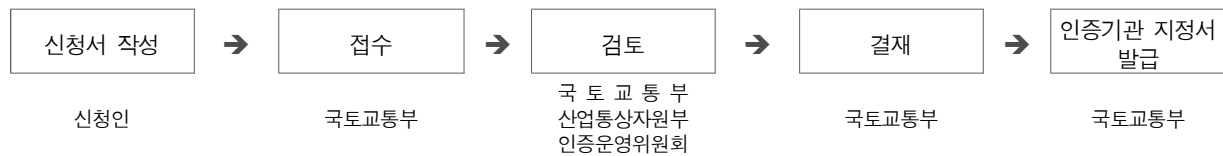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기관	명 칭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근 거		
	설 립 목 적		
	설립 연월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이
의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2. 인증기관 지정취소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